

제25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2 월 8 일

여 수 시 장 김기영



여수시 조례 제2257호

붙임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2257호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2099호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제2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한시기구)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섬박람회지원단의 존속기한은 <u>2025년 12월 31일</u>까지로 한다.</p>	<p>부 칙</p> <p>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p> <p>제2조(한시기구) ----- ----- ----- <u>2026년 12월 31일</u>----- -----.</p>